

수원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나10332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나103321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0. 19 선고 2020가단9269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계완

변론 종결 2023. 8. 31.

판결 선고 2023. 9. 2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0. 19. 선고 2020가단9269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5. 28.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6. 5. 접수 제659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영범

판사이형석

판사장지혜

별지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기는 2020. 5. 28.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와 항소장의 항소취지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계약 체결시기를 2017. 7. 26.로 기재하였으나, 명백한 오기이므로, 2020. 5. 28.로

정정하여 기재한다(원고도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계약 체결시기를 2020. 5. 28.이라고 기재하였다).